

보도시점 2026. 6. 18.(목) (배포 후 즉시) 배포 2026. 6. 18.(목)

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

- ‘자연’과 ‘문화’를 아우르는 ‘공원자원’ 정의 신설, 공원가치 확산 기반 강화
-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.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△‘자연공원법’, △‘대기환경보전법’ 등 9개 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‘자연공원법’ 개정안

‘자연’과 ‘문화’를 아우르는 ‘공원자원’에 대한 정의*를 새롭게 규정하고,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연공원**의 경제적·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 홍보토록 하는 등 공원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.

*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,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·무형의 자원

** 자연공원: 국립공원, 도립공원, 군립공원, 지질공원

② ‘대기환경보전법’ 및 ③ 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

‘대기환경보전법’과 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*을 초과할 경우, 사유**에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,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.

* (대기환경보전법) 100만원,

(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) 500만원(비교적 규모가 큰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)

** 현행법 상 △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손실, △심각한 경영위기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

‘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’은 그간 운영 중이던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 장비*와 관련된 운영주체 및 정보 수집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첨단감시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세웠다.

* 이동측정차량, 드론,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불법배출의심 사업장 점검 등에 활용

④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

택배 포장규제*가 시행됨에 따라,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이외 전담기구로서 ‘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’를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택배 포장규제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.

* (내용) 빈공간 비율 50%이내, 포장횟수 1차 이내

그밖에 ⑤‘폐기물관리법’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확대*하고, ⑥‘악취방지법’ 개정으로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했다.

* (기존) 태반만 재활용 가능 → (개정)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재활용 허용

아울러, ⑦‘실내공기질 관리법’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*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종합정보망(www.inair.or.kr)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.

* 지하역사, 어린이집,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

또한, ⑧‘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을 통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*의 설립·운영 근거를 신설하고, ⑨‘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’ 개정으로 법률 유효기간**(2027년 12월)을 삭제하고,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했다.

* (기능) 지방정부의 홍수·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·정책 등을 지원

** 법 제정(‘18년) 당시,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10년의 유효기간 규정

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. 끝.

담당 부서 (총괄)	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지현 (044-201-6390)
		담당자	사무관	전형호 (044-201-6399)
(자연공원법)	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	책임자	과 장	정호경 (044-201-7316)
		담당자	서기관	김현주 (044-201-7325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란 (044-201-7311)
(대기환경보전법)	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	책임자	과 장	서민아 (044-201-6900)
		담당자	사무관	고승우 (044-201-6909)
		담당자	사무관	강택신 (044-201-6906)
(환경오염시설편)	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	책임자	과 장	전원혁 (044-201-6715)
		담당자	주무관	정윤주 (044-201-6735)
(자원재활용법)	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이재 (044-201-7340)
		담당자	사무관	권혁진 (044-201-7349)
(폐기물관리법)	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양동 (044-201-73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선혜 (044-201-7364)
	자원재활용과	책임자	과 장	맹학균 (044-201-7380)
		담당자	사무관	정종호 (044-201-7393)
(약취방지법)	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	책임자	과 장	서민아 (044-201-6900)
		담당자	사무관	송창일 (044-201-6907)
(실내공기질법)	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경진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세영 (044-201-7511)
(수자원법)	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정용 (044-201-7611)
		담당자	서기관	고준귀 (044-201-7627)
(담주변친환경보전법)	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 (044-201-7682)
		담당자	사무관	위성원 (044-201-7697)

연도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)
1	자연공원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자원·문화자원을 포괄하는 '공원자원' 정의 신설 ○ 국가, 지방정부의 자연공원의 가치평가 및 홍보 의무 신설 ○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행위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자원의 체계적 보전·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마련 ○ 자연공원 가치평가 및 홍보의 안정적 추진 기대 ○ 사찰림 등 문화경관을 활용한 체험·휴식·문화 향유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장 기대 	공포한 날	자연공원과 정호경 과장 (044-201-7316) 김현주 서기관 (044-201-7325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최종 결정 용어를 "인증"에서 "지정"으로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도 변경을 통해 지질공원 선정 소요기간 단축 및 제도 운영 간소화로 지질공원 활성화에 기여 	공포 후 1년	자연공원과 정호경 과장 (044-201-7316) 유영란 사무관 (044-201-7311)
2	대기환경보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, 1백만원 초과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에 기여 	공포한 날	대기관리과과 서민아 과장 (044-201-6900) 고승우 사무관 (044-201-6909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수집·활용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굴뚝 측정에 따른 현장 안전 위험 저감 및 비산배출 오염물질 등 측정·관리 사각지대 감시 대응 강화 	공포 후 6개월	대기관리과 서민아 과장 (044-201-6900) 강택신 사무관 (044-201-6906)

연도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)
3	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, 5백만원 초과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에 기여 	공포한 날	통합허가제도과 전원혁 과장 (044-201-6715) 정윤주 주무관 (044-201-6735)
4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* 관련 환경공단 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** 설치 근거 마련 <p>* '24.4.30 도입 → 2년 유예 → '26.4.30 시행 ** (역할) 포장기준의 이행여부 점검, 실태조사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대포장 단속 강화하여 택배 수송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 유도 	공포 후 6개월	자원순환정책과 장이재 과장 (044-201-7340) 권혁진 사무관 (044-201-7349)
5	폐기물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관련 경미한 위반시 처벌 합리화* <p>* (현행) 현장정보 미입력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(개정) 미입력의 경우 현행 벌칙 적용, 그외 입력기간 초과 또는 부실입력 과태료 100만원 신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로, 과도한 형벌규정 적용 우려를 해소 	공포 후 6개월	폐자원관리과 김양동 과장 (044-201-7360) 이선혜 사무관 (044-201-7364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태반, 인체유래 지방 등 의료폐기물 재활용 근거 마련 <p>* (현행) 의료폐기물 중 태반만 재활용 가능 → (개정) 태반,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 상 의료폐기물은 재활용 가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체유래 의료폐기물을 의약품, 의료기기 등으로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폐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및 의료산업 발전 등에 기여 	공포 후 1년	자원재활용과 맹학균 과장 (044-201-7380) 정종호 사무관 (044-201-7393)
6	약취방지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약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약취 정보 수집·분석 체계화 및 효율적 약취 관리 	공포 후 6개월	대기관리과 서민아 과장 (044-201-6900) 송창일 사무관 (044-201-6907)

연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)
7	실내공기질 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부장관에게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내공기질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	공포 후 6개월	환경보건정책과 홍경진 과장 (044-201-6750) 박세영 사무관 (044-201-7511)
8	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역 물재해지원센터* 설립·운영 근거 마련 * 지방정부에 홍수·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·정책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역별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물재해 지원센터가 설립·운영됨에 따라 지자체의 물재해 관리 역량 강화 및 국민안전 확보 기대 	공포 후 6개월	물관리총괄과 이정용 과장 (044-201-7611) 고준귀 서기관 (044-201-7627)
9	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행법 일몰기한(2027.12.31.) 삭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댐 주변지역 친환경 사업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 마련 	공포 즉시	수자원개발과 이상훈 과장 (044-201-7682) 위성원 사무관 (044-201-7697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댐친환경 활용사업 위탁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경제성 제고 	공포 후 6개월	